

울산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13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1. 3. 9.

판결 선고2021.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31.자로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2017. 5. 31. 접수번호 037121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인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취지 기재 저당권 설정 당시 위 자동차가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D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형석

별지